장 대 B 구 역 재 개 발 정 비 사 업 조 합

우)3417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3, 대전 유성신협신사옥 605호, TEL: 042)822-7793 FAX: 042)822-7792

문서번호 : 장대B 조합 제2026 - 186호 시행일자 : 2026. 06. 16(화)

수 신 : 영업권자 귀하

제 목 :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 통지 2차

1. 귀 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절차를 거쳤으며,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3.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영업권자의 영업권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 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기간	1차 : 2026년 05월 28일(목) ~ 2026년 06월 16일(화) (오전 10:00 ~ 오후 16:00)
	2차 : 2026년 06월 17일(수) ~ 2026년 06월 22일(월) (오전 10:00 ~ 오후 16:00)
협의장소	장대B구역 이주상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9-9번지, 2층**)**
연 락 처	전화 : 042) 586-9256 / 팩스 : 042) 587-9098
협의방법	장대B구역 이주상담센터에서 협의 후 계약서 작성 (※ 사전에 방문일정 협의 바랍니다.)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협의된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은 첨부의 "개인별 보상액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계약체결일	협의 완료 후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참석 2. 인감증명서 1부.(사용용도 : 협의취득계약서 작성용) 3.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및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영업권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8.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영업권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9. 통장사본 1부.

첨 부 : 개인별 보상액명세서 1부. 끝.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